
제15차 기업등록부 전문가 회의 참가 결과보고

2017. 10.



경제통계국
STATISTICS KOREA

목 차

| | |
|---------------------------------|----|
| I. 출장 개요 | 1 |
| II. 제 15차 기업등록부 전문가회의 | 1 |
| 1. 회의 개요 | 2 |
| 2. 세션별 발표내용 | 4 |
| ㉠ 세션 1: 기업생멸통계 생산 | 4 |
| ㉡ 세션 2: 기업등록부의 역할 | 6 |
| ㉢ 세션 3: SBR과 지리정보의 연계 | 2 |
| ㉣ 세션 6: SBR 품질측정 및 품질관리체계 | 2 |
| III. 결과 및 시사점 | 27 |
| 1. 회의 주제 및 내용 | 27 |
| 2. 기업생멸통계 | 28 |
| 3. 경제총조사 | 30 |
| 【붙임】 참석자 명단 | 31 |

I 출장 개요

출장 목적

- 제15차 기업등록부에 관한 전문가 회의* (Meeting of the Group of Experts on Business Registers)에 참가하여 각국의 기업등록부 개발 현황 및 기업생멸통계 작성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

* UNECE, OECD, Eurostat 공동 주관으로 2년마다 홀수 년에 개최됨

출장 개요

- 출장기간 : 2017. 9. 25.(월) ~ 9. 30.(토), 4박 6일
- 출 장 자 : 경제통계기획과 5급 안은진,
경제총조사과 5급 송주화
- 수행사항
 - 기업생멸통계 작성의 최신 국제동향 파악(SBR과 타 자료 연계)
 - 경제통계 작성 현대화를 위한 기업등록부의 역할 공유
 - 각국 통계기관, 국제기구, 학계 네트워크 확보

II 제 15차 기업등록부 전문가회의

회의기간: 2017. 9. 27.(수) ~ 9. 29.(금)

회의장소 : OECD 컨퍼런스 센터(프랑스 파리)

참가인원 : 55개국 총 80여명 [붙임]

○ 국제기구: OECD(주최), UNECE, Eurostat, UNSD

○ 국가통계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멕시코, 칠레, 일본, 중국 등

회의구성 : 전문세션 6개 및 특별세션 3개

| 일자 | 구분 | 내용 |
|--------------|--|---|
| 9.27. (수) | 세션 1 | 기업등록부와 타 자료의 연계를 통한 기업생멸통계 생산 (Production of 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 and other statistics by linking the SBR with other data sources) |
| | | 네덜란드에서의 가족기업 - Rico Konen, <i>네덜란드통계청(Statistics Netherlands)</i> |
| | | 스페인에서의 가족기업 - Maria Concepción López Fernández, <i>European Family Businesses</i> |
| | | 새로운 기업생멸지표 - Mariarosa Lunati, <i>OECD</i> |
| | 특별세션 | 멕시코의 기업 수 추정방법 - Hugo Hernandez, <i>멕시코지리통계청(INEGI)</i> |
| | | BR과 무역통계를 연계한 새로운 OECD 핸드북 - Diana DOYLE, <i>OECD</i> |
| | 세션2 | 기업통계 생산과 관련한 현안 공유 (Report of the Task Force on Entrepreneurship Statistics) - Norbert Rainer, <i>expert(오스트리아 통계청)</i> |
| | | 통계생산의 현대화를 위한 SBR의 역할 (The role of the SBR in the modernization of the statistical production process) |
| | | 호주의 전환프로그램 - Luisa Ryan and Mark Burkhart, <i>호주 통계청(ABS)</i> |
| | | 영국의 통계생산과정에서 새로운 SBR의 역할 - Andrew Allen, <i>영국통계청(ONS)</i> |
| 특별세션 | SBR에서 기업특성별 자동 프로파일링 방법 - Guillaume Chanteloup, <i>프랑스통계청 (INSEE)</i> | |
| | 기업데이터 수집방법 개선 - 스웨덴 BR 사례 <i>Christian Ekström, 스웨덴 통계청(Statistics Sweden)</i> | |
| | 데이터 수집에서 SBR의 역할 <i>Steen Eiberg Jørgensen, 덴마크 통계청(Statistics Denmark)</i> | |
| 9.28 (목) | 슬로베니아 통계생산과정에서 SBR의 역할 확대 <i>Barbara Dremelj Ribič and Laura Šuštar-Kožuh, 슬로베니아통계청(Statistical Office of the Republic of Slovenia)</i> | |
| | 특별세션 | 기업등록부 개발 보고서 결과(Country Progress Reports) <i>Masao Takahashi, Statistics Bureau of Japan</i> |
| | 세션 3 | SBR과 지리정보의 연계 (Work on linking the SBR to geo-spatial Information) |
| | | 중국에서 SBR과 지리정보 연계 작업 <i>Gao Hansong,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i> |
| 세션 4 | BUR2000부터 SBER까지 주소 관리의 개선 <i>Christophe Chiri, 스위스 연방통계청(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i> | |
| 세션 4 | 행정자료의 이용성 증대방안 (Making better use of administrative data sources) | |

| | | |
|-------------|------|---|
| | | <p>스위스연방통계청의 관세행정자료 활용 사례 <i>Claude Macchi, 스위스연방통계청(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i></p> <p>조지아에서 SBR 구축에 있어 행정자료 사례 <i>Gogita Todraze, 조지아통계청(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Statistics)</i></p> |
| | 특별세션 | SBR의 가이드라인 개발(Developing global guidelines on SBRs) <i>Ronald Jansen, UNSD</i> |
| | 세션 5 |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Issue related to globalisation) |
| | | <p>프랑스의 기업집단 등록부 <i>Henri Mariotte, 프랑스통계청(INSEE)</i></p> <p>ESBRs business architecture (BA), 유럽의 프로파일링과 세계화 <i>Biliana Branska-Lateva, Vincent Hecquet, Enrica Morganti, Eurostat</i></p> |
| | | <p>튀니지안 SBR을 활용한 offshore regime의 성과 평가 <i>Hassen Arouri, 튀니지아 통계청(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i></p> <p>ESCB 기업등록부와 초국가적 자료원의 연계 방안 <i>Corvoisier, M. Kropp, P. Neudorfer, S. Thijs, ECB</i></p> |
| 9.29 (금) | 세션 6 | SBR 품질측정 및 품질관리체계 (Quality measurement and quality management frameworks) |
| | | <p>호주ABS의 프로파일링 방향 <i>Luisa Ryan and Maria Ioannou, 호주 통계청</i></p> <p>가계조사와 기업정보수집에서 품질 확보 방안 - 개관 및 새로운 방법 <i>Merja Kempainen, 핀란드 통계청</i></p> |
| | | <p>유럽 통계 시스템에서 SBR을 위한 데이터 품질 확보 프로그램 <i>Amerigo Liotti, Eurostat</i></p> |
| | | <p>독일-프로파일링을 통한 데이터 품질 관리 <i>Roland Sturm, 독일 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i></p> <p>기업등록부의 품질 <i>Jamie Brunet,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i></p> |
| | | 차기 의제 선정 및 회의 종료 |
| | 특별세션 | EECCA(동유럽·중앙아시아), SEE(동남유럽) 국가 보고 |
| | | <p>SBR에서 품질 문제 <i>Norbert Rainer, 전문가(오스트리아 통계청)</i></p> <p>SBRs - UNECE 가이드라인과 CIS 지역에서의 활동 <i>Vera Vasileva, CIS-STAT</i></p> |
| | | <p>Azerbaijan의 기업등록부 <i>Toghrul Ajalov, Azerbaijan 통계위원회</i></p> |
| | | <p>통계 생산 현대화를 위한 SBR의 역할 <i>Marijana Popovic-Roncevic, Statistical Office of Montenegro</i></p> <p>SBR에서 행정자료의 활용 <i>Norbert Rainer, 전문가(오스트리아 통계청)</i></p> |

세션1 기업등록부와 타 자료의 연계를 통한 기업생멸통계 생산

1 네덜란드 : 가족 기업(Family Business)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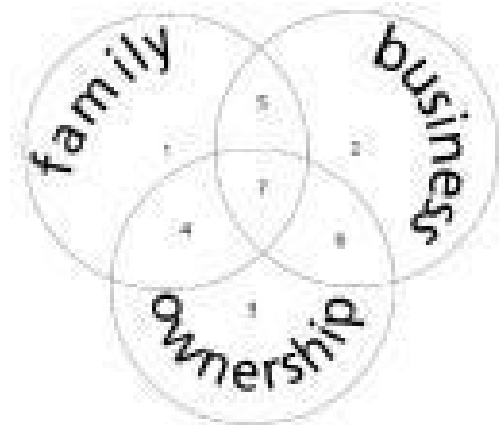
□ 연구 목적

- 가족 기업(Family Business; FB)은 생산(GNP) 및 고용의 영속성, 장기적 혁신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 『기업 경쟁력과 중소기업(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SME)』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럽 및 소속 국가 차원에서 가족기업의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함
- 네덜란드 통계청은 기업등록부(Dutch SBR)를 통해 가족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과 그 결과를 금번 회의에서 공유함

□ 접근 방법

○ 가족기업의 특징* 및 정의

- (특징) 가족기업(FB)은 비가족기업(Non-FB)과 다음 8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1. 소유권(Ownership)
2. 지배구조(Governance),
3. 이윤(Profit)
4. 보상(Reward)
5. 네트워크
6. 의사결정권
7. 경력(Carrier)
8. 관리(Management)

* 출처: Gersick, Davis, McCollom Hampton and Lansberg (1997), Generation to gener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정의)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가족기업으로 간주함

< 가족기업의 정의 >

| | |
|---|---|
| 1 |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권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을 설립 또는 인수한 자연인이나 그의 가족에게 있음 |
| 2 | 혈연 중 최소 1인 이상이 공식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에 포함됨 |
| 3 | 상장 기업의 경우 기업을 설립 또는 인수한 자연인(혈연)이 의사결정권을 25% 이상 보유한 경우 |

○ 네덜란드 통계청의 접근법

- (분류) 기업등록부에서 개별 기업에 대해 가족기업(FB) 여부를 판단
- (집계) 가족기업(FB)에 대해 기업등록부에 이미 연계된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지표를 집계함

- (자료원) 기업 정보(기업등록부, 과세정보 등)과 가계 정보(혼인, 자녀 등)을 연계하여 가족기업 통계생산을 위한 자료원으로 활용함

< 가족기업 통계 생산을 위한 자료원 >

| | |
|---|---|
| 기업등록부(Dutch SBR) | 기업집단(EG; enterprise group), 기업(EN; enterprise), 사업체(LOU; Local Units), 법적 단위(Legal unit) ¹⁾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 무역 명부(Trade register) |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자료 |
| 급여세 정보(Payroll tax register) | 네덜란드 국세청의 근로자 소득세, 사회보험 정보 |
| 자영업 관련(Satellite Self-Employed Entrepreneurs: SSEE) | 법인세 신고서로부터 법적단위의 주요 주주와 이들의 사업자번호에 대한 정보를 포함 |
| 가계 명부(Household register) | 혼인 명부에 더하여 동거하고 있는 구성원에 대한 정보 |
| 혼인 명부(Alliance register) | 성인 2명(통상 남녀 각 1명)의 현재, 과거 혼인 이력 |
| 자녀 명부(Child-parent register) | 부모-자녀 간 가족 관계 |

○ 가족 기업의 유형

- 가족 기업의 법적 형태(legal form)는 **회사(LL: Limited Liability)**, **조합(PA: Partnership)**, **자영업(SP: Solo Proprietor)**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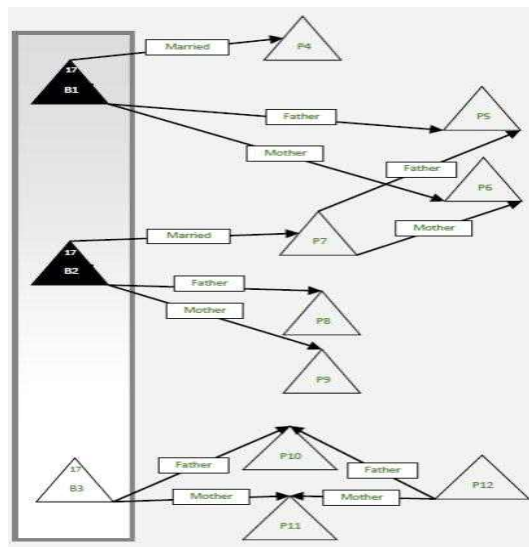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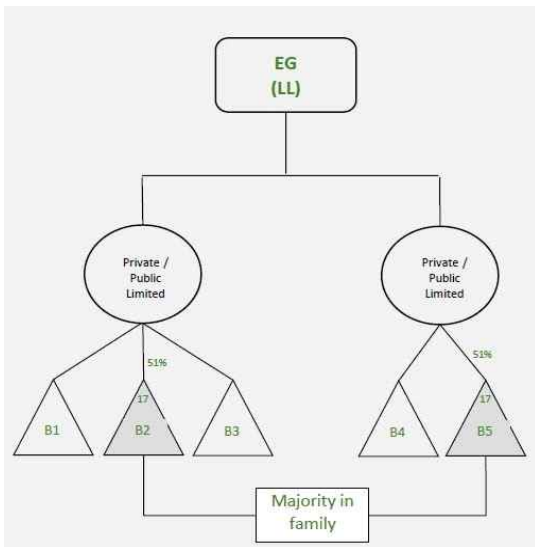
1) 법, 금융, 기타 행정자료에서 수집대상이 되는 실체에 해당하는 법적 단위는 통계작성 목적으로 식별되는 단위가 아니며, 법률에서 명시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p.196, 통계적 기업등록부 가이드라인)

① 회사(LL: Limited Liability)

◇ 가족기업의 조건

- SBR에 속한 기업집단의 형태가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또는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이면, 이사회 구성원과 단일주주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명부(Trade register), 급여세 정보(Payroll tax register)와 연계함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가족기업으로 간주함

| |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또는 관련자들이 혈연관계인 경우)이 기업집단 중 최대 기업의 단일 주주이면서 이사회 구성원이면 그 기업집단은 가족기업으로 정의 - 혈연관계는 혼인 명부(Alliance register)와 자녀 명부(Child-parent register)를 통해 파악함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이 '소득 코드 17'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 기업집단의 최대주주로 간주하고, 1인 이상이 '소득 코드 17' 갖고 있고, 혈연 관계인 경우 가족기업으로 판단함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또는 관련자들이 혈연관계인 경우)이 최대 주주인 법적단위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의 경우 동일인이 기업집단 본사의 법적단위에서도 최대주주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함 |



◇ 예시

B2, B5는 동일 기업집단 내 개별기업의 최대 주주로 '소득코드 17'

B1: 기업집단 이사회구성원 & P4와 결혼 & P5, P6의 아들

B2: 기업집단 이사회구성원 & P7와 결혼 & P5, P6의 며느리

B3: 기업집단 이사회구성원 & P10, P11의 아들 & P12의 형제

P4: B1의 처 / P7: B2의 남편 / P12: B3의 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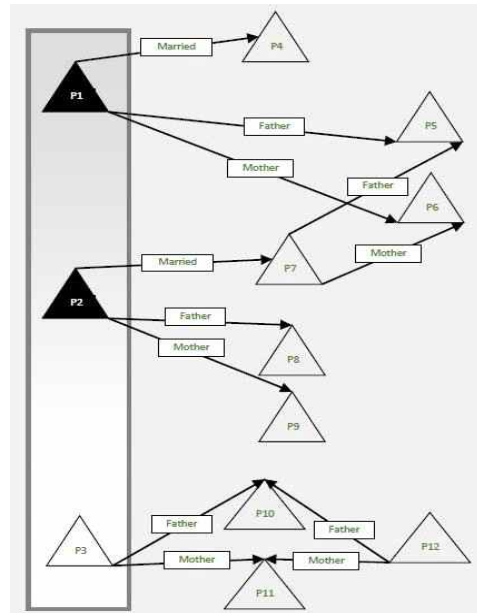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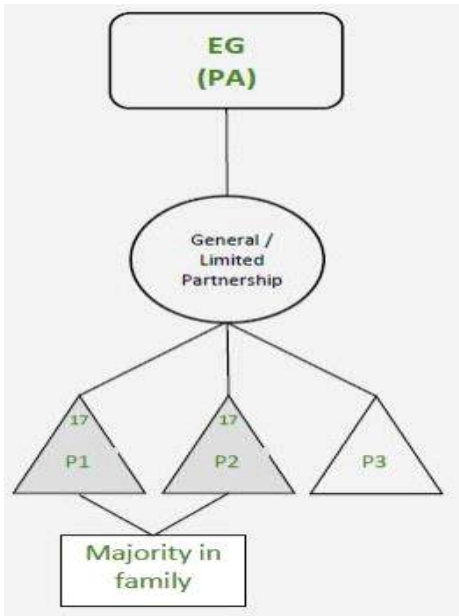
P5, P6: B1, P7의 부모 / P8, P9: B2의 부모 / P10, P11: B3의 부모

B1, B2는 시동생-형수의 관계로 가족이 기업집단의 이사회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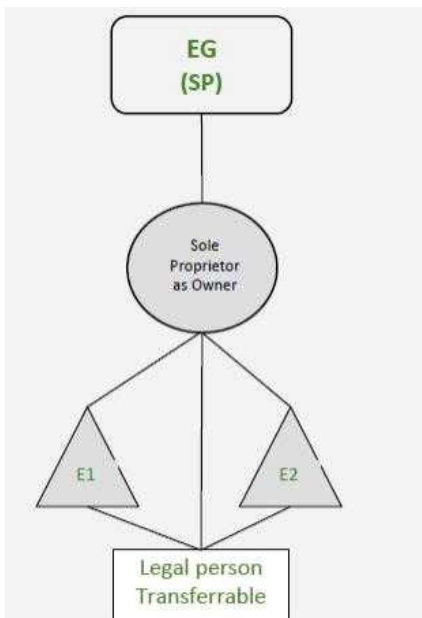
② 조합(PA: Partnership)

◇ 가족기업 파악 방법

- SBR에 속한 기업집단의 형태가 조합(partnership)이면, 모든 조합구성원(자연인)에 대해 무역명부(Trade register)와 연계하고, 조합 내 혈연관계 파악을 위해 혈연관계는 혼인 명부(Alliance register)와 자녀 명부(Child-parent register)를 활용함
- 급여세 정보(Payroll tax register)를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음



③ 자영업(SP: Solo Proprietor)



◇ 가족기업 파악 방법

- 자영업의 경우 기업등록부로부터 직접 가족기업을 추출할 수 있음
 - 네덜란드에서 자영업은 법인격이 없이 자연인 스스로 자기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경영자가 의사결정권을 보유함
- ⇒ 자영업은 정의 그 자체에 따라 가족기업으로 간주됨

□ 작성 결과²⁾

- 매년 네덜란드의 가족 기업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공표함
< 『네덜란드의 가족기업』 보도자료 표지 및 목차 >



- 네덜란드의 가족기업 수(2015. 1. 1. 기준)

- (기업 수) 가족 기업 집단은 26만 3천 개, 가족 기업은 26만 4천 개로 전체 기업 수의 68%임
- (매출액) '15년 기준 가족기업의 매출액은 3,430억 유로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27%를 차지함
- (고용 규모) '15년 기준 216만 개의 고용 창출을 하였으며, 이는 전체 고용 규모의 29%를 차지함

⇒ 전체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68%)에 비해 매출액과 고용 규모(20%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가족기업의 형태는 상대적으로 중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세부항목별 가족기업 현황

- 조직형태별, 종업원 규모별, 산업별 기업/가족기업 수

2) Family businesses in the Netherlands ('17. 4. 21. 공표),
2016. 1. 1. 기준 276,900개 활동 기업(전체 기업 수의 71%)

<조직형태별 기업 수>

(단위: 개)

| 조직 형태 | 가족 기업 집단(EG) |
|----------------------------|--------------|
| LL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 78,379 |
| PA 무한책임조합 | 105,763 |
| PA 유한책임조합 | 22,180 |
| PA Commandite partnerships | 1,411 |
| SP 자영업 | 55,635 |
| 전 체 | 263,368 |

<종업원 규모별 기업 수 >

(단위: 개, %)

| 종업원 규모(Size class) | 기업 | 가족기업 | 구성비 |
|--------------------|---------|---------|-----|
| 전 체 | 390,070 | 264,165 | 68 |
| 1명 | 40,450 | 20,810 | 51 |
| 2-9명 | 287,570 | 216,960 | 75 |
| 10-49명 | 48,580 | 24,085 | 50 |
| 50-249명 | 10,625 | 2,100 | 20 |
| 250명 이상 | 2,845 | 145 | 5 |

<산업별 기업 수 >

(단위: 개, %)

| NACE 분류 | 전체 기업 | 가족기업 | 구성비 |
|-------------|---------|---------|-----|
| 전 체 | 390,070 | 264,165 | 68 |
| A 농·임·어업 | 37,950 | 34,680 | 91 |
| B 광업 | 180 | 40 | 22 |
| C 제조업 | 23,920 | 15,335 | 64 |
| D 전기·가스·수도 | 370 | 110 | 30 |
| E 하수·폐기물처리업 | 655 | 305 | 47 |
| F 건설업 | 29,720 | 21,350 | 72 |
| G 도·소매업 | 92,870 | 67,015 | 72 |
| H 운수업 | 14,835 | 10,270 | 69 |
| I 숙박·음식점업 | 30,985 | 24,905 | 80 |
| J 출판·영상·정보 | 15,480 | 6,295 | 41 |
| K 금융·보험업 | 10,175 | 6,740 | 66 |
| L 부동산·임대업 | 7,625 | 4,270 | 56 |
| M 전문·과학·기술 | 44,565 | 25,485 | 57 |
| N 사업서비스업 | 18,805 | 12,465 | 66 |
| O 공공행정 | 640 | 5 | 1 |
| P 교육서비스업 | 8,435 | 3,955 | 47 |
| Q 보건·사회복지 | 26,475 | 14,715 | 56 |
| R예술·스포츠·여가 | 11,610 | 5,870 | 51 |
| S 개인서비스업 | 14,770 | 10,285 | 70 |

◇ 개별 질의 응답 : H. J. Konen(네덜란드 통계청 기업등록부 담당)

(Q1) 가족기업 통계를 작성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

(A1) 가족기업은 네덜란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Heineken이나 Philips와 같은 대기업도 가족기업의 형태로 출발하였음

(Q2) Non FB와 FB 간 경영방법 및 성과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A2) 가족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교하여 고용의 안정성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이는 경영성과와도 연계됨

(Q3) 한국의 사례와 관련 삼성전자 등 많은 한국 대기업은 오너 일가의 경영 및 경영권 세습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소수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지배구조의 특수성이 있어 가족기업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A2) 그러함. 또한 우리의 통계 작성 목적 및 관심은 다국적기업,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있음

2 OECD: 기업생멸통계 신규지표 작성 관련

□ 기업생멸통계 작성배경: 2000년대 초반

- 기업가 정신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지속적 성장과 고용창출, 사회 안정을 위한 핵심 요소
 - 시장에서 기업의 역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기업생멸통계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반영된 것임
- ※ OECD와 Eurostat은 『기업가 정신에 관한 프로그램(Entrepreneurship Indicators Programme: EIP)』을 통해 기업등록부 기반의 방법론을 권고(Eurostat-OECD Manual of Business Demography Indicators)하여 많은 국가들이 생멸통계 작성을 시작함

□ 기업생멸통계 개요

- 작성 지표
 - 기업 신생률, 소멸률, 생존율과 기업 신생에 따른 고용창출, 기업 소멸에 따른 고용 감소, 고성장 기업 비율 및 고용효과 등
- 작성 주체
 - 개별 국가: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보도자료 공표)
 - ※ 한국은 『2011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개발('12.12.) 이후 매년 공표 중
 - 국제 기구: Eurostat(보도자료 및 DB), OECD(연구 보고서 및 DB)

□ 신규지표 개발 관련

- 필요성
 -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구조의 변화(세계화, 디지털화 등)에 따른 기업 성과 창출과 존속을 위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접근법
 - (변수 추가) 기본적인 변수만 포함된 BR에 다른 기업 통계(무역통계 등), 기타 행정자료(기업 대표자의 성 연령 학력 국적 등)와 연계하여 변수를 추가

◇ 기업생멸통계 관련 개별 질의 내용

- 담당자: Mr.Gueram Sargsyan, Ms.Liliana Suchodolska (OECD 기업통계담당)

1. OECD 제공 생멸통계 기존 대비 변경사항 설명

* 관련문서 : ① 국제협력담당관-2104(2017.8.30)호 2017년 OECD 규모별 사업체 통계 및 생멸통계 관련 조사표 작성 요청, ② OECD 규모별 사업체 통계 및 기업 생멸통계 조사표 제공 메모보고(2017.9.29.)

| 구분 | 기존 | 변경 |
|----|--|--|
| 1 | 26개 요청항목 중 6개 제공 | 26개 요청항목 중 9개 제공 |
| 2 | 항목별 총합(total)만 제공 | 종업원 규모별 세부 수치 제공 |
| 3 | 종사자 기준 고용주기업(EN) 산출 - 종사자 수 2명 이상 기업으로 정의 | 종업원 기준으로 EN 산출 ·수치 정정 - 종업원 수 1명 이상으로 정의 |
| 4 | 고성장기업 20% 제공(HGE) | 고성장 기업 10% 기준 추가 제공 |

2. OECD 통계DB 및 기업보고서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6』 수치 정정 요청

* 관련문서 : ① 국제협력담당관-2459호(2017년 6월말 기준 국제기구 자료제공 및 모니터링 현황보고), ② 17년 상반기 기준 국제기구 자료제공 및 모니터링 현황보고(2017.9.29. 메모)

- (Q1) 매년 OECD 요청에 따라 생멸통계 자료를 재집계하여 제공해왔으나 제공 자료가 아닌 KOSIS에 있는 자료가 DB에 반영된 이유는 무엇인가?
- (A1) 기존에는 항목별 총합만 있어 종업원 규모(size class)별 세부수치는 KOSIS 영문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밖에 없었으나 올해 9월 자료는 세부수치를 제공했기 때문에 빠르면 '17.11월 DB에 정정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Q2) 현재 OECD SDBS DB 및 기업보고서에 제시된 한국 수치는 고용주 기업 관련 수치는 전체 활동기업에 대한 것이므로 정정요청

3. 기업생멸통계 작성방법 관련 논의

- (Q1) [통계작성 대상 관련] Eurostat 통계 DB나 OECD 기업보고서 등을 보면 한국의 활동기업 수가 지나치게 많은데 이는 개인사업자 전체를 통계에 포함하기 때문이며, 이는 한국의 신생률, 소멸률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됨. 다른 유럽국가의 경우 매출액이나 종업원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생멸통계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는지?
- (A1)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등으로 인해 기업 수가 inflation되어 있음. 스위스 등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통계를 작

성함. 또한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통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신생률, 소멸률 수치와 관련하여 재가동(reactivation)을 통계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함.

- (A1') 한국의 경우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t±1)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어 현재 재가동을 통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매뉴얼에 따라 (t±2) 접근법을 따르고, 재가동을 반영한다면 신생률, 소멸률 수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Q2) [통계단위 관련] 기업생멸통계 작성을 위한 통계단위는 기업체(enterprise)이나 자영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개별 기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A2) 개별 국가마다 다르지만 독일 등의 경우 개인 단위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의 기업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음
- (Q3) [공기업 관련] 일부 공기업이 기업생멸통계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외할 경우 일부 산업분류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공기업을 활동영리기업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 다른 나라의 사례는?
- (A3) 매뉴얼에는 없지만 의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공기업이 활동영리기업에 포함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봄

4. OECD측의 요청사항

- (요청1) 기업생멸통계의 국제비교(International comparability)를 위해 고용주 기업 신생률, 소멸률, 생존율 지표 작성이 필수적임

(A1) 현재 한국통계청은 전체 활동기업에 대한 생멸통계만 작성하고 있으나 생멸통계의 작성 취지 및 이용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고용주 기업 신생, 소멸 통계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통계 생산 시 우선 고용주 활동기업에 대해 집계할 예정이며, 향후 '성장에 의한 진입(entry by growth)' 및 '축소에 의한 퇴출(Exits by decline)' 등 세부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지표를 제공할 계획임

* 관련문서 : 2018년 통계연구과제 수요제출(2017.10.18.메모)

- (요청2) 기업생멸 국제매뉴얼 초안 검토 후 수정본 제출 바람

(A2) UNECE 담당자(Mr. Carsten Boldsen)에게 10월말까지 한국 사례 수정본을 제출할 계획임

3 특별세션: 기업통계에 관한 T/F 보고서

□ T/F 구성배경

- 기업가 정신과 기업생멸통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BR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등록부, 기업생멸과 다른 기업통계를 연계하는 작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짐

- '16년 가을 T/F*를 구성하여 기업생멸과 기업가정신 관련 통계 생산 지원을 위한 기업등록부 개발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중

* T/F 구성원은 캐나다(공동의장), Eurostat, 핀란드, 멕시코, 네덜란드, OECD, UNECE, 미국 BLS, Census Bureau, Norbert Rainer(공동의장)이며, 덴마크, 이탈리아, 한국은 초안 작업에 참여함

□ 보고서 개요

- (내용) 기업생멸통계의 중요성, 주요 개념(고용주 기업, 통계단위, 고정장·가젤 및 연속성 규칙 등)을 강조하고, 방법론과 사례에 대한 소개

- 이 보고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업생멸 및 기업등록부 관련 국제매뉴얼*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기업등록부에 관한 가이드라인(UNECE, 2015), 기업생멸통계에 관한 매뉴얼(OECD-Eurostat, 2007), 기업등록부 권고 매뉴얼(Eurostat, 2010) 등

- (일정) '18. 9월 최종 발간을 목표로 현재 초안 작업 중

- 한국은 OECD요청으로 생멸통계 작성방법 및 '15년 기준 통계수치를 제공(17. 6)하였으며, 초안 검토 후 수정본을 UNECE에 제출할 예정(17. 10)

< 가이드라인 작업 일정 >

| 일 정 | 내 용 |
|----------|-----------------------------------|
| ~'17.12. | 초안 리뷰 및 교정 작업 |
| ~'18. 1. | 2018년 2월 전문가회의에 초안 제출 |
| ~'18. 4. | CES*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교정 작업 |
| ~'18. 5. | '18. 6월 CES Plenary session 안건 제출 |
| ~'18. 9. | 최종 편집 및 출간 |

*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s

◇ 『기업생멸과 기업통계 생산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목차(초안)

(Draft Guidelines on the statistical infrastructure required to support the production of business demography and entrepreneurship statistics)

| 구분 | 소제목 및 주요 내용 |
|----|--|
| 1장 | 소개_Introduction - 기업가 정신 측정의 중요성 -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통계 - 가이드 라인의 목표 |
| 2장 | 기업생멸의 정의와 주요 개념 Definitions and key concepts of business demography - 기업생멸의 기본 개념 - 기업생멸의 변수와 특성 - 고성장과 가젤기업 관련 개념 정의 |
| 3장 | 기업생멸통계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등록부 시스템 Requirements of SBR system to support of demography statistics - 기업생멸통계생산과 기업등록부 - 기업등록부와 종단적 기업정보 - 자료원, 포괄범위, 통계단위 - 기업생멸통계 생산을 위한 종단 DB 활용 |
| 4장 | 자료원으로 기업등록부에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 Guidance for linking the SBR with information from other sources - 기업등록부 구성 - 기업 관련 활용 데이터 -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
| 5장 | 기업등록부를 활용하지 않은 생멸통계 작성사례 Overview of non SBR approaches to produce BD statistics - 멕시코 : 경제총조사에 기반한 기업생멸 - 한국 : 기업생멸통계 작성 사례 - 미국 : 연간 기업 조사 |
| 6장 | 기업생멸통계 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 - 기업생멸통계 핵심지표 - 고성장과 관련된 기업생멸통계 - 마이크로데이터 연계를 통한 새로운 지표 |
| 7장 | 향후 연구과제 Topics for future work and research - 기업생멸통계의 프레임워크 - 기업생멸통계를 위한 조사방법 - 행정자료의 활용 - 국제 비교 가능성 |

세션2 통계생산의 현대화를 위한 SBR의 역할

1 영국 : 통계생산에서의 새로운 SBR의 역할

※ 영국 통계청 Andrew Allen(Head of Business Register Strategy & Outputs)

Q. 영국 BR 개요 및 census와의 관계

A1. 정확하게는 IDBR(The Inter-Departmental Business Register)이라고 표현함
 (공표항목) 종사자 수(employees)와 매출액(turnover)이 대표항목으로, 영업비용 항목은 BR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음
 (공표시기) 매년 10월 전년도 BR 결과를 공표함(기준시점은 당해연도 3월)
 (통계단위) 기업체 단위로 BR을 공표하며 267만개의 기업체와 313만개의 지사(local units)가 이에 소속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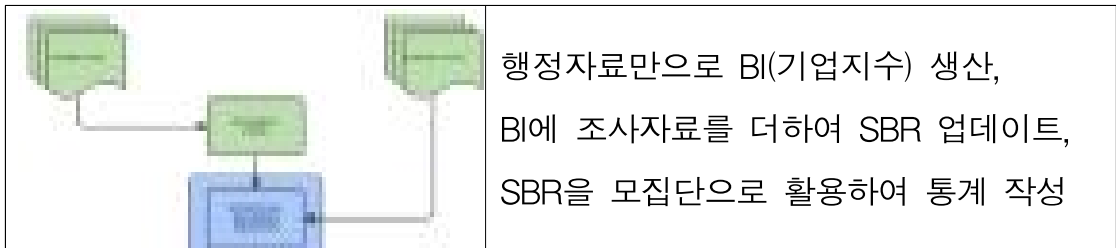
A2. BR이 있기 때문에 census를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음, 또한 BR에 존재하지 않는 영업비용 항목은 각 산업별 조사에서 별도로 실시함

□ 영국 통계청(ONS)는 현재 BR을 재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과거 | 현재 |
|-------------------|---------------|
| Register based | Service based |
| 특정된 프로세스(bespoke) | 확장된 플랫폼 |

- (3가지 역할) 기업지수(BI : Business Index) 생산, 경제상황 분석 기능, 다른 통계작성을 위한 골격의 역할(spine function)
- (기업지수 생산) 법적 단위(legal unit) 관점에서의 기업체 수 (경제적 관점과 상이), 행정자료들을 연계하여 생산함
 - (기초자료)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의 법인등록명부, 부가가치세(VAT), 근로소득세(PAYE)를 기초자료로 사용 중이며 향후 법인세(Corporation Tax) 등을 입수 예정
 - (연계) 3가지 행정자료를 법적 단위로 연계, 기업지수(BI) 시산

- (경제분석) 가장 최근의 행정자료를 이용하므로 시의성과 품질이 높음, 경제구조 분석의 타당성이 증대됨
 - (골격 역할) SBR을 타 자료(주소, 인구 등)와 재연계함으로써 현장조사를 대체하고, 새로운 분석을 시도함
 - (향후계획) '18년 1분기 새로운 SBR 가동을 목표로 개발 중
- 새로운 SBR에서는 모든 기업(full business population)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핵심기능) 통계단위 생산, 표본추출의 모집단, 타 자료와의 연계 가능,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로 파티션을 나눔



2 호주 : 전환 프로그램 (ABS Transformation Program)

- (개요) 전환 프로그램은 호주 통계청(ABS)의 통계정보 관리 과정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 이를 통해 미래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 전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BR 재개발을 진행, 이를 통하여 새로운 데이터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전환 프로그램
- (목표) 비용절감, 통계오류 감소, 공표시기 단축, 형식적인 절차(red tape) 축소
 - 따라서 향후에는 품질검증, 분석 및 설명, 주된 사용자와의 소통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할 예정임

- (특징) 모든 데이터는 '자료 호수'인 EDME(Enterprise Data Management Environment)에 일원화되어 적재됨

□ BR 재개발

- BRIMS(통합관리시스템)에는 모든 법적 단위(legal entities)가 포함됨, 약 850만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음
 - (기초자료) 국세청자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로파일링
 - (조사단위) 통계적 활동 단위(TAU : type of activity unit)
 - (주요활용) 통계 표본추출의 모집단, 기업생멸통계 작성 등

3 스웨덴 : BR 기초자료 수집의 개선

- (배경) BR을 1984년에 구축한 이후, 법률 개정과 기초자료의 개선 없이 수집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 현재 국세청과 법인등기국(Companies Registrations Office)으로부터 일주일 단위로 자료를 제공 받으며,
 - 자료 업데이트를 위해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연간조사를 매년 8월에 실시(약 8천개의 법인, 그에 소속된 88천개의 사업체가 해당됨)
- (개선) 2015년부터 디지털화를 시도하였으며, e-ID를 발급하여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웹에 접속 가능
 - 모든 데이터는 공유(shared)되며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됨
 - 모든 법적단위(legal units)과 지역단위(its local units)를 포함
 -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
- (향후계획) 웹페이지,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의 자료를 결합하여 시장동향의 빠른 분석을 시도할 예정

특별세션 일본³⁾ : 기업등록부 개발 보고서 결과

□ 기업등록부 개발보고서(Country Progress Report; CPR)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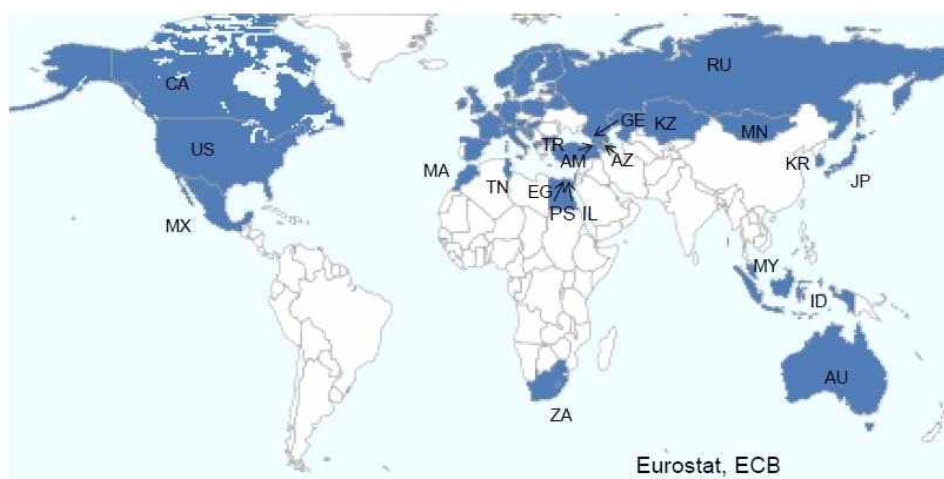
- 비스바덴 회의 주최국인 일본 통계청은 각 국의 기업등록부 개발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비스바덴 회의 전후로 기업등록부 개발 보고서를 취합하였으며, 금번 회의를 통해 그 결과를 공유함

< 기업등록부 개발보고서 내용 >

| |
|---|
| <p>1. 현황(Organisation, Population and Usage of the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 명칭/담당 조직/인력/구축 목적/구축 연도/2016년 말 기준 활동 기업 수(법적 단위) |
| <p>2. 최근 3년간 주요 업무(Progress and Developments in the Past Ye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명, 과업 내용 설명(최대 3개) |
| <p>3. 향후 계획(Future pla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명, 과업 내용 설명(최대 3개) |
| <p>4. 주요 과제(Main challeng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명, 과업 내용 설명(최대 3개) |

- 49개국으로부터 기업등록부 개발보고서(CPR)를 취합한 결과 보고서의 57%가 유럽국가로부터 수집됨

* 비스바덴 그룹의 요청으로 한국 통계청의 기업등록부 구축 현황 제출('1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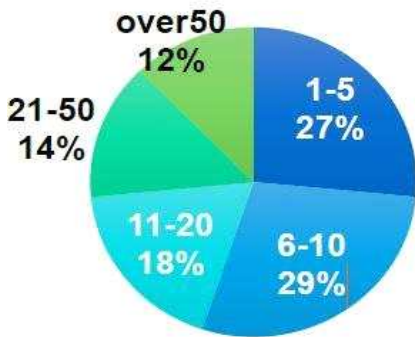


3) UNSD 주관 제25차 Wiesbaden 회의(2016.11./일본 도쿄) 주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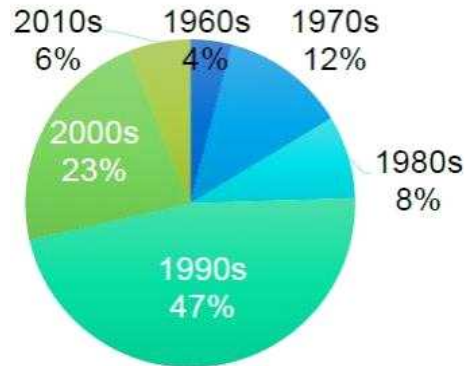
□ 기업등록부 구축현황

- (종업원 수) 기업의 55%가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함
- (설립년도) 사업체의 47%가 1990년대에 설립됨
- (SBR 규모) 49개국의 SBR 중 57%가 1백만 이하의 기업규모 (또는 법적단위)를 보유함
- (지역정보) SBR의 52%가 지역정보(소재지)를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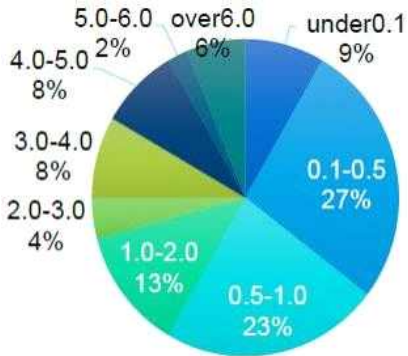
< 종업원 규모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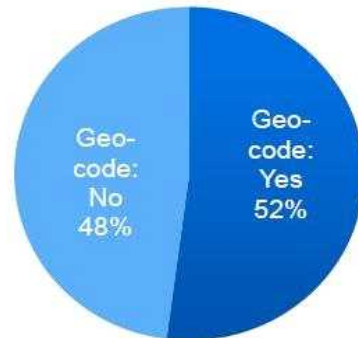
< 설립 연도 분포 >



< SBR 규모 분포 >



< 지역정보 포함 여부 >



(단위: 백만)

□ (향후 계획) 일본 통계청은 각 국으로부터 취합한 CPR을 인터넷을 통해 보고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17. 11월경)

※ 일본 통계청 Masao Takahashi(Director/Statistics production division) 개별 질의

Q. 일본 BR과 census의 관계

A. BR은 census를 위한 주소 리스트가 있는 명부에 불과함. 모든 항목은 census에서 조사되며 여기서 신생 사업체가 파악되면 BR에 업데이트 되는 형식

세션3 SBR과 지리정보의 연계

1 중국 : SBR과 지리정보의 연계

- 중국 SBR은 주소지를 12자리 통계지역코드로 관리하며 2013년 이 정보와 PDA를 활용하여 센서스를 실시
 - 모든 사업체는 주소와 통계코드를 가지고 있음
 - 과거 센서스에서는 종이지도를 직접 들고 다니며 조사함
 - 2013년 중국 내 최대 지리정보회사인 AutoNavi와 통계청이 협업하여 센서스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지도서비스를 제공받음
- 조사원(enumerators)에게 20만 개의 PDA를 보급함
 - PDA는 7인치 터치스크린, 카메라, GPS기능이 있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센서스를 위한 앱이 커스터마이징 되어있었음



▲ 센서스용 온라인 소프트웨어

- SBR은 센서스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되므로, 문제는 2014년부터 설립된 사업체는 SBR에 반영이 되지 않음

- 2013년 조사결과 1,100만개 법적 단위(legal units)가 있었으며, 2016년 현재 1,800만개로 늘어남
- 2018년 제4차 센서스가 예정되어 있음
- 부가적인 문제는 중국 내 행정구역의 변경·통합이 잦으며, 통계작성을 위한 권한 있고 종합적인 주소 데이터베이스가 없음
- 중국 통계청은 향후 가장 작은 마을 단위의 통계 지역을 매년 업데이트를 목표로 함

특별세션 SBR 가이드라인 개발

※ UNSD Mr. Ronald Jansen(Assistant Director/Trade Statistics Branch) 개별 질의 결과

Q. BR 전문가회의 발표주제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A. 이번 전문가회의에서 제안된 주제들을 다음번 회의에서 다뤄볼 예정이며, 기업생멸통계나 경제총조사 등 BR을 활용한 사례를 한국에서 발표해도 좋음

- 가이드라인 개발과 국제적인 기업 통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
- 현재 회원국은 다음과 같음 (의장국 : 이탈리아)

| | |
|----------|-------------------------------------|
| Americas | 캐나다, 멕시코, 미국, 브라질, 자메이카 |
| Europe |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조지아 |
| Asia |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 |
| Africa | 튀니지, 남아공, 에티오피아, 가나, 모리셔스 |
| 관계기관 | 유로스탯, UNECE, OECD, UNIDO, IMF, UNSD |

- 주요 목적은 방법론 가이드라인(SBR, 사업체조사, 산업분류 등), 의무사항 작성임
- 2018년 5월 멕시코회의까지 초안 작성 후 9월 비스바덴 회의에서 완성하는 것이 목표

세션6 SBR 품질측정 및 품질관리체계

1 캐나다 : BR의 품질

□ 캐나다 기업구조 및 프로파일링

- 캐나다에는 6백만 개의 활동기업이 있으며, 이 중 320만 개 기업은 통계청 고유번호(BN : Business Number)를 가짐
 - 나머지 280만개 기업은 종사자가 없거나 지불할 세금이 없는 자영업자(sole proprietors)로 BN이 부여되지 않음
- 2만 2천개의 기업(전체의 0.4%)이 전체 매출액의 53%를 차지함

| | 개수 | 매출액 | 종사자 |
|-------------------------------|-----------------|-----|-----|
| 1. simple | 6,000,000 (95%) | 44% | 56% |
| 2. profiled large and complex | 22,000 (0.4%) | 53% | 41% |
| 3. administrative complex | 260,000 (4.6%) | 3% | 3% |

- 2만 2천개의 기업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다음과 같이 시행됨

| 기업구조 | | 프로파일링 내용 |
|----------------|---|------------------------|
| legal entities | 본사 (Parent Enterprise) | 소유주, 합병 변동사항 점검 |
| | 지사 (Subsidiaries) | |
| non-legal | 사업체 (Establishment) : 종업원, 영업비용 및 매출액 정보 모두 존재 | 조직 관계 파악, 부족한 항목 조사 |
| | Locations : 종업원, 영업비용 혹은 매출액 정보 존재 | |

□ 표본오차(frame errors)의 측정과 감소(mitigation)

- BR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3,600개의 사업체를 표본추출하여 활동여부와 산업분류를 검증한 결과, 2016년 13.1%가 잘못된 산업분류된 것으로 나타남

○ BR의 품질 측정 요소

| | |
|------------------------|--|
| 타당성(Relevance) | BR의 내용, 개념, 분류가 통계적으로 제표가능한 수준인지 |
| 정확성(Accuracy) | 커버리지 수준, 산업분류와 계층화(stratification)를 위한 사업자 분배가 믿을만한 수준인지 |
| 적시성(Timeliness) | 필요한 때에 지표가 생산될 수 있는지 |
| 정시성(Punctuality) | 스케줄에 맞춰서 생산될 수 있는지 |
| 일관성(Coherence) | 개념과 분류가 표준화되어 있는지 |
| 해석능력(Interpretability) | 가장 최신의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지 |
| 접근성(Accessibility) | BR로 만든 기업생멸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 |

- (과다집계) 과다집계는 시간차이(time lags)와 비활동(de-activation) 기업을 포함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
- (과소집계) 과소집계(Under-coverage)는 주요 문제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파악된 바 없음
 - 기업은 국세청에 기업등록 후 세금을 내야함(remittance), 따라서 과소집계되는 기업은 그 활동이 대체적으로 BR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간주
- * 영세업체(micro businesses)의 등록 및 세금납부 내역이 없는 문제는 여전함, 이들 업체는 영업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움

□ 향후 과제

- 최근 지역통계가 성장함에 따라,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역 분배하는 것이 직면한 과제임
- 데이터 연계를 위한 허브로서의 등록부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품질관리가 중요해짐
 - 주택, 인구, 사업체 등록부의 통합시스템을 구축 중임
- 복잡 대기업 프로파일링의 대안적 방법과 자료원을 연구 중임

2 호주 : 프로파일링 방향 설정

- 호주의 기업프로파일링은 1980년대에 시작함
 - (목표)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체들의 구조를 파악하여 고품질 통계를 생산하는 것
- 호주통계청(ABS)에는 두 가지 기업모델이 있음

| Profiled population | Non-profiled population |
|---------------------|-------------------------|
| 대기업 | 간단한 사업체들 |
| BR에서 1% 정도의 숫자를 차지 | BR에서 99% 정도의 숫자를 차지 |
| 해당기업과 직접 연락 |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음 |

-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1,600여개 기업을 프로파일링함에 따라 모든 기업들은 4년에 한 번씩은 조사받게 됨
- 프로파일링에는 산업분류, 매출액, 종사자 수, 연락처 등이 포함됨
- 향후 프로파일링은 양보다는 품질향상에 초점을 맞춤
 - '16년 1,620개 기업 프로파일링에서 '17년 909개로 축소

3 핀란드 : 자료수집의 품질검증

- 핀란드 통계청은 등록 자료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업과 개인에게 직접 자료를 수집함, 특히 짝수 해에는 사업체, 홀수 해에는 가계 중 무응답자에 대한 특별 조사를 함
- 연간 재무제표 응답률 : 88%('08) → 74%('15)
- 사업체 대상 응답률 제고 방안
 -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의 권한 확장
 - 거절 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 권한 부여
 - 대기업은 특별 전담팀을 구성
 - 중앙 콜센터 설치

4 독일 : 프로파일링 품질관리

- (기업 정의) 기업(enterprise)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인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 (프로파일링) 기업 구조(enterprise group)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통계적 데이터 수집 방법이며, 다음의 4가지 방법이 있음
 - 독일에서 기업프로파일링은 새로 착수한 사업
 - SBR에서 시행되며 기업구조에 대한 수집을 목표로 함

| | |
|------------------------------|---|
| 1 Manual Intensive profiling | 기업체에 직접 연락 |
| 2 Manual Light Profiling | 인터넷, 언론, 기업보고서 등 가능한 정보를 활용 |
| 3 Automatic Procedures | 법적 패턴, 경제적 활동을 확률적 추정(probabilistic assumption) |
| 4 Schematic Approach | 기업체 전반에 관한 도식 |

- 기업프로파일링 품질은 (1)조사대상(Target Population), (2) 사용자 교육, (3)구조와 내용이 결정함
 - (조사대상) 10만개가 넘는 기업체를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1만명, 2천명)로 나누어 방법을 달리함
 - (사용자교육) 프로파일링은 통계사용자에게 적절한 통계단위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임
- 현재 33명의 프로파일링만 전담하는 인력이 있음

IV 결과 및 시사점

1 회의 주제 및 내용 관련

- 제15차 회의는 기업생멸통계 생산과 기업등록부 구축, 관리와 관련된 전통적인 주제부터 세계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집단 프로파일링, 품질관리 등 최근 주목받는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음
- 금번 회의는 각국의 기업등록부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교류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기업등록부 구축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 지역 국가 뿐만 아니라 CIS 지역 및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한국 통계청의 경우에도 '16년 이후 기업등록부 구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등록부 구축 관련 방법론과 BR을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사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문제점을 발견·개선할 필요가 있음

◇ 차기 회의 일정/장소 : 2019. 9. 15~19, 오스트리아 비엔나

* UNSD 주관 제26차 Wiesbaden 회의는 2018. 9. 24~9. 27. 스위스 개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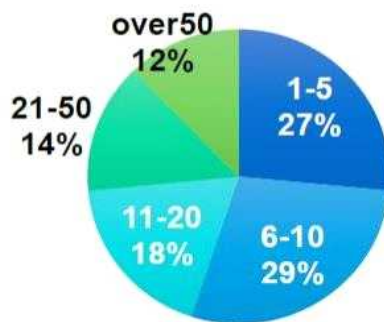
2 기업생멸통계 관련

□ 기업생멸통계 생산에 있어 통계 단위의 적절성

- (현황) 현재 기업생멸통계 통계 작성단위는 기업체(enterprise)
 - 법인의 경우 본·지사 연계를 통해 본사를 기업으로 정의하고,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상의 개인을 기업으로 정의함
 - (문제점) 개인사업자 전부를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 수를 과다 추정할 가능성이 존재함
 - 49개국의 기업등록부에 대한 조사결과 1백만 개 이하 기업 단위 보유국이 57%이며, 5백만 개 이상 보유국은 8%에 불과함
- ※ '15년 기준 한국의 활동기업*은 555만 4천 개, 종사자 수는 1,855만 3천 명임
* 영리기업(비영리 제외) 중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

[참고] 각 국의 기업등록부 규모 비교

Percentage of countries/organizations by **number of employees** in register units



➤ 55% employ 10 or less employees for SBR.

(단위: 백만 개, %)

*출처: 2016년 기준 기업등록부 개발 보고서(Country Progress Report)

- (활용성) 개인기업 수의 10%에 불과한 법인에서 생산, 고용 등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활동기업 분류에 일률적으로 포함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경제의 역동성(business dynamics)을 파악하기 위한 생멸통계 작성 목적 구현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 (1안) 일정 규모 기준(매출액, 종업원 등) 이상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OECD 국가(독일, 스위스 등) 사례 참고
- (2안) 전수통계를 작성하되 법인과 개인을 분리하여 차별화된 세부 지표 작성

□ 기업생멸통계 신규 지표 작성의 필요성

- 현재 활동기업*에 대한 지표만 작성·공표하고 있으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고용주 기업 관련 지표 작성이 필수적
- **종업원(employee) 1인 이상 기업* 지표**(고용주 기업, employer enterprises)는 전체 활동기업 지표보다 국제 비교를 용이하게 함

* 많은 국가에서 기업생멸 모집단으로 기업등록부를 활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포착됨(활동기업 모집단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매출액과 종업원 규모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통화 단위에 기반 한 매출액 기준은 인플레이션이나 재정정책에 영향을 받아 신생, 소멸 국제 비교 시 종업원 기준보다 변동성이 큼)

※ 활동기업 모집단의 구분(OECD-Eurostat 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 매뉴얼 3장)

- OECD 매뉴얼에서는 **종업원 규모***에 따라 활동기업 모집단을 다음과 같이 구분

< 활동기업 모집단의 범위(Scope of population) >

| 구 분 | 명 칭 | 종업원 규모 |
|-----------|---|------------------|
| N | 활동기업 모집단(active enterprises) | 전체 |
| N1 | 활동 고용주 기업 모집단(active employer enterprises) | 종업원 1명 이상 |
| N2 | 활동 고용주 기업 모집단(active employer enterprises) | 종업원 2명 이상 |
| N-N1 | 활동 비고용주 기업 모집단(active non-employer enterprises) | 종업원 없음 |
| N-N2 | 종업원이 없거나 한명인 활동기업 모집단 | 종업원 0 또는 1명 |

3 경제총조사 관련

◇ OECD 통계부(Statistics Directorate) 개별 질의 결과

- 담당자: Mr.Gueram Sargsyan, Ms.Liliana Suchodolska

Q. BR 및 census에 무등록사업자 포함문제

A. 행정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법적 무등록사업자는 가능하다면 통계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배제하여도 무방함

Q. BR 및 census에 장소가 불분명한 사업자 포함문제

A. 현장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가 불분명하여도 해당 사업자의 주소가 행정자료에 존재한다면 통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온라인 혹은 우편 조사를 권고함.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생기는 시계열 단절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님.

- (해외사례) 개별 국가마다 산업구조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 다름
 - (기초자료) 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업등록부(BR)를 구축한 나라와 여전히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나라가 구분됨
 - (역할) 기업등록부 구축국은 이를 제표하여 공표하는 것보다는 각종 통계작성을 위한 근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여김
 - (항목) 행정자료는 시의성과 정확성이 높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또한 항목 집계에 한계가 있으며 포괄 문제가 있음
 - (포괄문제) 기업등록부를 구축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자료가 무등록사업자를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
 -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는 기업에 대한 통계 제표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정교한 통계작성이 1차적 목표임
 - 이용자 유의사항에 기초자료원을 행정자료로 명시함으로써 포괄 범위를 확실히 함
 - 유럽에는 사업체(establishments)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기업체(enterprises)와 지역 단위(local units)의 개념으로 구분함
- ⇒ 공표 항목의 선정, 공표 주기, 통계단위 결정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등록센서스 전환 추진계획에 반영하겠음